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2021. 1. 28.(목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2일

-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환경산림국장 김연준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중앙 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위원회 수당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출석 및 관계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변경(안 제3조)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→ 별표의 기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정진설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환경 분쟁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환경오염원인 등으로 피해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낮은 전문가 수당의 지급으로 위원 및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 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」 제7조(수당 등)에 위원회에 출석한비상임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안 제3조의 재정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은 가능함.
- 현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수당(참석 및 안건검토수당) 100천원, 전문가수당(현지조사 및 자문수당) 130천원으로 중앙 및 전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비교하여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수당 180천원, 전문가수당 400천원이며, 전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균은 재정위원 수당 198천원, 전문가수당 367천원으로, 우리도 수당지급액이 중앙 및 타시·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안 별표의

재정위원수당 150천원과 전문가 수당 350천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앙과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환경피해에 대한 복잡한 분쟁사건의 증가와 다양한 환경오염원인 등으로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에는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낮은 전문가 수당의 지급으로 재정위원 및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액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실비를”을 “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 · 구조문대조

현 행	개 정
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①~③(생략)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①~③(생략)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<u>별표의 기준에 따라</u> 지급할 수 있다.</p>

[별표]

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(제3조제4항 관련)

구분	수 당	단 위	단 가	지급대상
위 원	출석수당	일당	- 출석수당 · 기본수당 : 100,000원 · 초과수당 : 30,000원 - 원거리 출석수당 · 50km초과~100km이내 : 30,000원 · 100km초과~200km이내 : 50,000원 · 200km초과 : 70,000원	- 회의에 참석한 위원 · 기본수당 : 2시간 이내 · 초과수당 : 2시간 초과 (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) ※ 다만, 4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 1회 추가 지급 - 편도거리기준
	안전검토수당	건당	- 기본수당 : 50,000원(건당)	- 사건별로 기본수당 지급 (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)
전문가	현지조사수당	일당	- 현지조사수당 : 150,000원 - 원거리 출석수당 · 50km초과~100km이내 : 30,000원 · 100km초과~200km이내 : 50,000원 · 200km초과 : 70,000원	- 분쟁의 인관관계 조사 및 규명을 위한 현지조사 수당 (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) - 편도거리기준
	자문 및 의견서 작성 수당	건당	- 자문 및 의견서 작성 : 200,000원	- 분쟁사건 현지조사에 따른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제출

관련법령 발췌

□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환경피해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한 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관관계 규명에 전문성 요구 증대
-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위원회 수당 지급액 비현실화, 중앙 및 타 시·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된 수당 지급 필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환경분쟁 사건별 선임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참석, 안전검토,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,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

3. 관련조문

- 위원회 운영(안 3조제4항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

구분	수당내역	수당 지급액	비고
재정위원	출석수당	100천원/일	2시간 초과 시 30천원 추가
	안전검토 수당	50천원/건	
전문가	현지조사 및 자문수당	350천원/건	

※ 원거리 출석수당 : 편도 이동거리 50km를 초과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추가 지급
50km~100km이내 : 30천원, 100km~200km이내 : 50천원, 200km이내 : 70천원

○ 산출근거

- 재정위원 안전검토 및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×30명 = 4,500천원
- 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수당 350천원×25명 = 8,750천원
- 원거리 수당 50천원×15명 = 750천원

- 부담비율 : 일반회계 [도 100%]

나. 추계 결과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4백만원씩 향후 5년간 7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 일반회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'21년)	2차년도 ('22년)	3차년도 ('23년)	4차년도 ('24년)	5차년도 ('25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					
위원 및 전문가 수당	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재원 조달	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의존 재원	국고보조금	-	-	-	-	-	-
자체 수입	도비 일반회계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시·군비		-	-	-	-	-	-
자부담		-	-	-	-	-	-

※ 부담비율 : 도비 100%

- 작성자 :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이일우